

# 서면 질문 답변서

질문위원	강석주의원	소 속	평창군의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농업기술센터소장)	답변시한	10일(경과시 중간 통보)

## 《질문요지》

1. 2002년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(사업비 50,000천원)과 관련
  - 사업추진배경 및 대상지 선정과정은?
  - 사업대상지, 사어비등 당초 세부추진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은?  
※ 계획서 사본 첨부
  -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술개발과 제출서류 24쪽(농업인 건강관리실 현황 및 연도별 추진계획) 2002년도 사업추진계획란중 사업 규모 1개소 방림면 계촌1리 제출근거 및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유?
  - 사업대상지 변경이 있었다면(계촌1리에서 계촌3리) 설득력있는 상유와 원인발생처(발생인)은?  
※ 변경서류 첨부
  -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계촌1리 및 계촌3리 주민간 갈등해소 대책과 행정불신에 대한 계촌1리 주민 불만해소 대책은?
  -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문책의지는?

## 《답 변》

- 불임 참조

※ 2002년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(사업비50,000천원)과관련

## 1. 사업추진배경

### 가. 배경

- 과중한 농작업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비닐하우스증 및 농부증 심화
- 농작업 피로를 풀 수 있는 마을단위 피로회복 시설이 필요함
-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 부족

### 나. 사업기간 : 2002년 1월 ~ 12월

### 다. 지원대상 및 조건 : 농촌마을 중

- 농작업 환경이 열악하며, 활용 가능한 주민이 많은 마을
- 시설을 설치·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적정규모의 대지나 건물이 있는 마을
- 마을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주민의 시설 활용 참여 의지가 높은 마을
- 마을내 조직활동이 활발하여 시설 활용시 조직적 뒷받침이 가능한 마을
- 운영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(마을기금, 회비, 공동활동수익금 등)
- 설치 후 활용·관리 계획이 타당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을
- 주변에 쉽게 활용 가능한 피로회복시설(목욕탕, 찜질방, 체력단련센터 등)이 없는 마을

### 라. 지원단가 : 개소당 50,000천원(도비 14,300, 지방비 35,700)

### 마. 지원시설

- 피로회복시설 : 기본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 구비
  - 기본시설 : 건강기구실, 찜질방, 목욕실 등
  - \* 찜질방, 목욕실 등의 규모는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
  - \* 가능한한 운영비 절감을 위한 설비 설치(심야전기, 태양열온수기 등)
  - 권장시설 : 식품가공실, 조리실, 노인실, 생활체육시설 또는 쉼터 등
-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 기구
  - 농작업 후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기구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의 연령층, 요구 등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

## 2.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

- 농림사업 일환으로 사업시행년도 1년 전 읍·면사무소로 신청 접수  
: 방림면 신청서 사본 첨부 (붙임 1)
-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여 차기년도 사업대상지 확정  
: 2001농점심의회 농업정책분과 심의자료 사본 첨부 (붙임 2)

## 3. 사업대상지 세부추진계획서 및 향후 추진계획

- 방림면 계촌3리 사업계획서 첨부 (붙임 3)
- 향후추진계획 : 마을 사업추진협의회 실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추진

## 4.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과 관련 잘못된 사유

- 행정사무 감사자료 제출시 마을 오류 기재 : 계촌3리⇒계촌1리
- 방림면 계촌1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

## 5.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계촌1리 및 계촌3리 주민간 갈등해소 대책

- 계촌1리를 방문하여 의원 및 마을대표자에게 사업대상지 변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음

## 6. 행정불신에 대한 계촌1리 주민 불만해소 대책

-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읍면당 1개소씩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추경 또는 2003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예정

## 7. 사업대상자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문책의지는?

- 현지(계촌1리)주민과 상담, 오해소지 해소후 불문
- 향후 여하한 사례 발생치 않도록 주의촉구